

주표시면 14p	치즈베이글
	치즈 8.01%
	660 g (110 g X 6개 / 2,160 kcal)

영양정보	총 내용량	660 g (110 g X 6개)
	1회 제공량	110 g 360 kcal
1회 제공량당	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	
나트륨	190 mg	10 %
탄수화물	43 g	13 %
당류	8 g	8 %
지방	16.0 g	30 %
트랜스지방	0 g	
포화지방	5.0 g	33 %
콜레스테롤	0 mg	0 %
단백질	11 g	20 %
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(%)은 2,000 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		

정보표시면 10p	제품명	치즈베이글		
	식품의 유형	빵류 (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)		
	유통전문판매원	-		
	제조원	(주)고메베이글 /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34, 805호 (상대원동)		
	소비가한	별도 표시일까지	내용량	660 g (110 g X 6개 / 2,160 kcal)
원재료명	밀가루(밀:캐나다산,미국산),가공치즈(치즈(외국산),옐로우슈레드(팜올레인유:말레이시아산),변성전분),설탕,치즈(치즈:미국산,뉴질랜드산),재제소금,곡류가공품,효모,혼합제제(밀가루,스테아릴젯산나트륨,염화암모늄,비타민C,혼합제제(밀가루,α-아밀라아제(비세균성),헤미셀룰라아제),황산칼슘,헤미셀룰라아제,α-아밀라아제(비세균성))			
알레르기유발물질	밀, 우유	보관방법	-18°C이하 냉동보관	
포장재질(내면)	폴리프로필렌	품목보고번호	2009027505125	
* 주의사항: 본 제품은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하지마세요.				
* 이 제품은 대두, 호두, 땅콩, 돼지고기, 쇠고기, 닭고기, 토마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.				
* 조리방법: 180°C 예열된 오븐 또는 에어프라이어에 2분간 가열하여 섭취하세요.				
*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				
* 반품 및 교환장소: 판매처 또는 제조원				
* 소비자 상담실: 031-741-0201				
*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				

적용대상(=법적 표시사항)	활자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제품명 ✓ 내용량(열량) ✓ 원재료명(원산지, 알레르기유발물질 포함) ✓ 영양성분 ✓ 유통기한 ✓ 품목보고번호 ✓ 주의사항 ✓ 제조원, 유통전문판매원 ✓ 부정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 1399 (간식: 부직용 추경사제 신고는 국번없이 1577-2488) ✓ 포장재질 ✓ 식품유형 별 세부표시사항 (※: 식초의 용산함량, 냉동식품의 주위사항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활자크기 10PT 이상 (원산지: '민하게 표시' 단, 표시면적이 부족한 경우¹⁾ 10 PT 이하 가능 ✓ 장형 90%·자간-5% 이상 단,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² 미만 경우 장형 50%·자간-5% 이상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"> 장형 100%·자간0% 장형90%·자간-5% 장형50%·자간-5% </div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분리배출표시 ✓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교환보상 ✓ 바코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가로·세로 8mm 이상 ✓ 별도 규정 없음 ✓ 대한민국외의소 바코드 규격 적용

※ 상기 "법적 표시사항" 이외 표시사항(예: 브랜드 설명)은 활자규정 적용 대상 아님
 ※ ¹⁾ 표시면적 부족 시, 광고 및 기타 문구(HACCP, 세계일류상품, CCM, 브랜드 설명문구, 조리방법 등) 최소화 및 삭제

정보표시면적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100cm² 이상: 활자크기 10 PT, 장형 90%, 자간 -5% 이상 ✓ 100cm² 미만: 활자크기 10 PT, 장형 50%, 자간 -5% 이상
적용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법적 표시사항을 10PT·장형90%·자간-5% 적용하더라도 표시면적 내 표시 불가능한 경우 10PT 이하 가능 ※ 주표시면이 30cm² 미만: 영양성분 생략 & 물을 제외한 5가지 원재료명만 표시 가능

인증마크	
분리배출	
바코드	-